

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정관

제정: 2015년 8월 22일

1차 개정: 2016년 6월 10일

2차 개정: 2017년 3월 18일

3차 개정: 2018년 3월 24일

4차 개정: 2020년 4월 15일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명칭)

이 협회는 '한국전문간호사협회'(이하 본 협회로 칭한다)라고 하며, 영문 표기는 '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'로 한다.

제 2 조(목적)

본 협회는 전문간호사의 발전과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, 학술,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사무소)

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~ 구 ~ 동 ~ 번지에 둔다.

제 4 조(사업)

-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전문간호사의 역할, 권리와 법적 제도의 개선
 - 전문간호사의 실무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
 - 전문간호학 발전과 학술 진흥
 - 전문간호 지식 및 정보 교류
 - 전문간호사의 교육과 육성
 - 전문간호사의 권익 옹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기타 복지향상
 - 국·내외 보건의료전문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
 - 기관지, 학술지, 학술서적 발간
 - 그 밖의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 5 조(조직구성 및 산하단체)

1. 본 협회는 보건복지부 유관단체로서 지부와 분야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2. 본 협회는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두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2 장 회원

제 6 조(회원의 자격)

본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 및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 회원은 정관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입회를 신청하며,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[정회원] 정회원은 국내 및 국외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간호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으로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간호사로 한다. [개정, 18.03.24]
2. [준회원] 준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전문간호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로 한다.
3. [특별회원] 본 협회는 이사회에서 자격과 권한을 정하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

제 7 조(권리와 의무)

1.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 협회가 제공하는 자료 및 출판물,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열람과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2. 정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총회에 참석하여 본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3. 준회원은 본 협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.
4. 회원은 간호사의 윤리와 본 협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5. 회원은 본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, 회비 및 총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분담금, 특별회비 등을 본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.
6. 회원은 본 협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본 협회의 운영에 협력해야 한다.
7.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협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.

제 8 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1.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2.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3. 탈퇴, 제명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원

제 9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 협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- 1명
2. 부회장 - 2명
3. 이사 - 20명 이내(총무, 회계, 기획, 학술, 교육, 연구, 홍보, 정책)
4. 감사 - 2명

제 10 조(임원의 선임)

1. [임원 후보] 본 협회의 회장, 부회장,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2. [회장 후보] 회장 및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임원의 경험이 있던 자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본 협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.
3. [회장의 선출] 본 협회 정관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한다.
 - 가.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.
 - 나. 가목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,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4. [부회장의 선출] 부회장은 임원이 경험이 있던 자로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부회장 후보를 선출직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.
5. [이사의 선출]
 - 가. 회장, 부회장은 이사가 된다.
 - 나. 이사의 선출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 이사 후보를 선출직 이사 당선자로 한다.
6. [감사의 선출]
 - 가.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, 득표 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, 동수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11 조(임원의 임기)
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2.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12 조(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)

1. 회장이 유고 또는 결위된 때에는 부회장, 총무이사 순으로 회장직의 직무를 대행하고, 회장, 부회장 및 총무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결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2. 회장이 결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3.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0일 이내에 지명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제 11 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.

제 13 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본 협회의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
5. 본 협회의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14 조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 15 조(회장)

1.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회장은 총회, 이사회를 소집, 주관하고 결정된 사항을 위임 받아 성실하게 집행, 관리할 의무가 있다.

제 16 조(부회장)

1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활동을 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 유고 또는 결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대리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.

제 17 조(이사)

1.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18 조(감사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·

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
4.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 장 총회

제 19 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20 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1.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2. 정기 총회는 연 1회, 전 회계연도의 마지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3. 임시 총회는 재적회원 1/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를 요구 시, 제 13 조 4 호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 시,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4. 정기총회는 개최 30일 전, 임시총회는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총회의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기록하여 홈페이지,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.

제 21 조(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 협회의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의 승인
4.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5.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
6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
8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정책

제 22 조(위임)

본 협회의 회원이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총회 의장에게 위임장을 보내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여기서 위임 받은 권한은 출석과 의결권을 의미한다.

제 23 조(성립 및 의결정족수)

1.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총회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정관 개정 및 기본 재산 처분, 해산에 관한 사항은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2. 임원 선출은 제 10조 3호에 따라 의결한다.

제 24 조(의결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25 조(의사록)

1. 총회의 의사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회장, 부회장 및 출석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.
2. 총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3. 총회의 의사록은 회원이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다.

제 26 조(총회 결과 통보)

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사회

제 27 조(이사회 구성)

이사회는 제 9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제 28 조(이사회 소집)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2.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3.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
제 29 조(이사회 의결사항)

1.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- 가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- 나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다. 예산 계획, 결정 및 결산,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호목 변경에 관한 사항
 - 라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- 마.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
 - 바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- 사.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에 권한에 속한 사항

- 아.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지.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2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0 조(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)

1. 이사회는 다음 임무를 담당한다.
 - 가. 본 협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
 - 나. 세입, 세출 예산 편성,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다.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
 - 라. 제 33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마.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- 바. 정관개정 및 규정 의제, 개정에 관한 사항
 - 사.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이사의 임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3. 이사회에 연속적으로 불참하거나 임무 수행이 불성실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해임을 권유할 수 있다.

제 31 조(의결권의 행사)

1.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2. 대리인은 다른 이사여야 하며, 대리할 수 있는 이사 수는 1인에 한한다.
3.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2 조(의결제척사유)

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6 장 위원회

제 33 조(위원회)

1. 본 협회는 상설기구로 상임위원회와 비상설기구로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.
2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4 조(상임위원회)

1. 본 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.
 - 가. 기획위원회
 - 나. 학술위원회

- 다. 연구위원회
 - 라. 교육위원회
 - 마. 홍보위원회 [신설, 16.06.10]
 - 바. 정책위원회 [신설, 17.03.18]
2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이사가 된다.
 3.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구성은 위원장이 한다.
 4. 각 위원회는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맞추어 활동 내용을 계획한다.
 5.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신설하고 폐지할 수 있다.

제 35 조(위원회의 임무)

1. 기획위원회
 - 가. 본 협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
 - 나. 정관 및 규정 관리
 - 다. 회원 관리
 - 라. 기타 본 협회 발전을 위한 사업
2. 학술위원회
 - 가. 학술업무 총괄
 - 나. 학술대회 준비, 개최 및 지원
 - 다. 출판업무
3. 교육위원회
 - 가. 교육업무 총괄
 - 나. 회원의 계속 교육,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
 - 다.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및 간호학 발전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회
 - 가. 연구업무 총괄
 - 나. 주제연구 기획 및 수행
 - 다.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
 - 라. 전문간호사관련 연구 분석
5. 홍보위원회 [신설, 2016.06.10]
 - 가. 홍보업무 총괄
 - 나. 본 협회 홍보물 제작과 취재
 - 다. 모니터 활동 및 대 언론활동
 - 라. 협회 후원관리
6. 정책위원회 [신설, 2017.03.18]
 - 가. 협회 정책업무 총괄
 - 나. 전문간호사 관련 법률, 제도 조사
 - 다. 보건의료 관련 제 법규에 관한 사항

제 7 장 재정

제 36 조(재원)

1. 본 협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- 가. 입회비
 - 나. 연회비 및 평생회비
 - 다. 보조금 및 기부금
 - 라. 기타 수입금

제 37조(회계 연도)

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 38조(재정의 운용)

1.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은 회계이사가 총괄한다.
2. 회계이사는 재정 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.
3. 회장은 회계이사를 지휘, 감독하며,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.
4. 본 협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5. 본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(개정).
6.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, 차기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7. 재정부용에서 발생한 이익은 임원이나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으며,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9 조(결산 보고)

1.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보고한다.
2.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3.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보고한다.

제 40 조(임원의 보수)
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 그 외 관련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8장 보칙

제 41 조(해산 결의)

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.

제 42 조(잔여재산의 처리)

해산된 때의 본 협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귀속시킨다.

제 43 조(정관의 변경)

1. 정관 개정은 회장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.
2.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.
3. 회장은 개정된 정관 개정안을 총회 후 7일 이내에 총회결과에 포함하여 공지해야 한다.

제 44 조(서면 결의)

이사회와 총회 후 결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출석한 임원의 서명으로 확인한다.

제 45 조(규칙 제정)
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
1.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.
2.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3. 본 개정된 정관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개정된 정관은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개정된 정관은 201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개정된 정관은 202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 당일 본 협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3조 (발기인의 기명날인)

본 협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